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11 월 1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편견 및 차별 사건 신고 직통전화 주 전역 운영 발표**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 경찰, 뉴욕주립대학(SUNY) 경찰 및 주 인권국이 뉴욕에서 추가 신고된 증오 범죄 수사 예정*

*주지사,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 대처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주 교육부에 발송*

**편견 사건 신고 전화: 1-888-392-3644**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편견 및 차별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직통전화의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이 직통전화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 정부의 노력을 더욱 보강하는 동시에, 편견적 처우를 받은 사람들이 인권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근 차별, 편견에 따른 위협, 희롱 및 폭력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주지사는 뉴욕 전역의 증오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의 다각적 공조 수사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각급 학교에서 배척 행위에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뉴욕 학생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 교육부에 발송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뉴욕 웰스빌과 리빙스턴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주 주지사가 두 개의 별도 수사를 지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불빛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분열과 공포, 증오의 정치를 퍼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계속해서 맞설 것입니다. 뉴욕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다양한 곳 중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풍부한 문화와 관습 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사이의 차이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정부는 계속해서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신고된 편견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뉴욕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 또는 위협 행위든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뉴욕주민들께서는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의 무료 직통전화 (888) 392-3644 번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입니다. 범죄를 신고하고자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911 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욕주 경찰은 편견 범죄에 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수사관 46 명을 주 전역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수사관들은 편견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 경찰 사건을 조사 중이며 다른 법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학교에서 이러한 사건들의 확산함에 따라, 주지사는 뉴욕주 학생인권법(Human Rights Law and Dignity for All Students Act)의 강력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범죄적 차별 행동을 법집행 기관에 신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각급 학교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MaryEllen Elia 주 교육부 커미셔너에게 발송했습니다.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습,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성향에 관한 인식이나 믿음 때문에 희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시된 일련의 범죄행위 중 하나를 범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유형의 인식이나 믿음의 결과로서 범해지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중오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중오 범죄는 개인, 개인들의 집단, 또는 공공 재산이나 민간 재산을 상대로 범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 법률에 따라,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민족, 그리고 그 밖의 보호받는 많은 분류 사유에 기초해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입법화한 역사를 자랑하며 모든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뉴욕주 인권국은 고용, 주택, 공공시설, 신용 및 기타 영역에서 연령,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성, 혼인 여부, 장애, 군필 여부 및 기타 특정 분류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인권법과 인권국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웹사이트([www.dhr.ny.gov](http://www.dhr.ny.gov))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OVS 는 223 개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중오 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기 중재 및 상담 등의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개인적 구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 보상과 기타 지원을 범죄 피해자가 관계 기관에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VS 지원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온라인(<https://ovs.ny.gov/locate-program>)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ovs.ny.gov](http://www.ovs.ny.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